



의안번호

제61호

**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8. 28.

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61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8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」 개정 및 「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(공원등) 설치·관리 규칙」 제정으로 읍·면·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현재 위임된 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.

(안 별표 3, 별표 4)

- 희망마을건설과 : 양수기 보관, 관리 및 대부
 - ※ 기존의 논산시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위임되지 않고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양수기관리운영업무에 대하여 읍·면·동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- 도시재생과 : 가로(보안)등 관리(보안등신설, 접수)
 - ※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(공원등) 설치·관리 규칙이 제정되면서 논산시 사무위임조례에 가로(보안)등 관리업무의 근거법령을 추가하고,
 - ※ 논산시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읍·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가로(보안)등 관리업무(가. 공공요금 및 제세, 나. 보안등 신설 접수) 중 가.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를 삭제하여 논산시 도시재생과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가) 예고기간 : 2018. 7. 20. ~ 8. 9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 실과 : 충청남도 총무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,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자치행정과장	박 찬 해
	서무팀장	구 본 길
	담당자	이 민 규 (746-5224)

[별표 3]

읍·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
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열린 홍보실	1	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	「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
자 치 행 정 과	1	읍·면 근무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
	2	읍·면장의 관내 출장	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
	3	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. 근무지정 나. 사무의 인계·인수 다. 관내출장명령 및 복명서 처리 라. 당직근무명령 마. 시간외 근무명령 바.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	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 「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」 제1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9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6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
	4	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
	5	「인감증명법」 제3조 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	「인감증명법」 제14조의 2
주민생활 지 원 과	1	각종급여대상자(기초생활보장, 영유아보육, 아동청소년, 한부모가족, 장애인복지, 노인복지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사회취약계층, 출소예정자)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, 조사후 반영 보장결정 요청,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
	2	의료급여에 대한 다음사항 -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	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2조
사 회 복 지 과	1	장애인 등록접수 복지카드전달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100세 행복과	1	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- 개장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관 광 체 육 과	1	체육공원 관리·운영	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3조
세 무 과	1	지방세 제증명 발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
	2	당해 읍·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·감액결정 및 징수	「논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4조
	3	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33조
	4	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
	5	재산세 과세대상(건축물,주택,토지) 및 납세의무자 이동조사	「지방세법」 제120조 「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」 제14조
	6	지방세 자진신고 처리(읍·면분)	「지방세법」 제20조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3조
회 계 과	1	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관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, 제4조
	2	시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
	3	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
	4	불용물품 매각처분	「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
	5	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 명령	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5조
	6	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	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5조
	7	공유재산 실태조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, 제8조
민원토지과	1	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(대상: 주민등록표상의주소, 사업자등록증 의사업장소재지,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,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)	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의2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26조의2, 제26조의3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7조, 제18조
도 로 교 통 과	1	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
	2	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9조
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환 경 과	1	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(면에 한함)	「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3조
	2	쓰레기 투기단속	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, 제63조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42조
	3	공중화장실 관리	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산 림 공 원 과	1	시유재산(임야)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
	2	국공유재산 실태조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, 제8조
희망마을 건 설 과	1	국공유재산 실태조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, 제8조
	2	양수기 보관, 관리 및 대부	「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」 제3조, 제4조
도시재생과	1	가로(보안)등 관리 - 보안등신설 접수	「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(공원등) 설치·관리 규칙」 제8조
안 전 총 괄 과	1	재해의 응급조치 및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4조
	2	재해조사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8조
	3	수방자재의 비축·관리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3조
보 건 소	1	방역소독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

[별표 4]

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
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열린홍보실	1	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	「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
자 치 행 정 과	1	동 근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
	2	동장의 관내 출장	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
	3	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. 근무지정 나. 사무의 인계·인수 다. 관내출장명령 및 복명서 처리 라. 당직근무명령 마. 시간외 근무명령 바.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	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 「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」 제1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9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6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
	4	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
	5	「인감증명법」 제3조 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	「인감증명법」 제14조의2
주민생활 지 원 과	1	각종급여대상자(기초생활보장, 영유아보육, 아동청소년, 한부모가족, 장애인복지, 노인복지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사회취약계층, 출소예정자)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, 조사후 반영보장결정 요청,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
	2	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다음 사항 -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	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2조
사회복지과	1	장애인 등록접수 복지카드 전달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세 무 과	1	지방세 체증명 발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
	2	해당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·감액결정 및 징수	「논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4조
	3	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33조
	4	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
	5	재산세 과세대상(건축물·주택·토지) 및 납세의무자 이동 조사	「지방세법」 제120조 「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」 제14조
회 계 과	1	불용물품 매각처분	「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
	2	배정예산 범위에서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명령	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5조
	3	지정공공시설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
민원토지과	1	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(대상: 주민등록표상의주소, 사업자등록증의사업장소재지,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,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)	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의2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26조의2, 제26조의3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7조, 제18조
희망마을 건설과	1	양수기 보관, 관리 및 대부	「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」 제3조, 제4조
안전총괄과	1	수방자재의 비축·관리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3조
보건소	1	방역소독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 3] 읍·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

현행				개정안			
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열린홍보실	1	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	「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	열린홍보실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1	읍·면 근무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	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자치행정과	2	읍·면장의 관내 출장	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	자치행정과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. 근무지정 나. 사무의 인계·인수 다. 관내출장명령 및 복명서 처리 라. 당직근무명령 마. 시간외 근무명령 바.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	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 「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」 제1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9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6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	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4	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		4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5	「인감증명법」 제3조 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	「인감증명법」 제14조의 2		5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현행				개정안			
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주민생활지원과	1	각종급여대상자 및 (기초생활보장, 영유아보육, 아동청소년, 한부모가족, 장애인복지, 노인복지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사회취약계층, 출소예정자)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, 조사후 반영 보장결정 요청,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1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	주민생활지원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의료급여에 대한 다음사항 -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	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2조	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사회복지과	1	장애인 등록접수 복지카드전달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	사회복지과	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100세행복과	1	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- 개장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	100세행복과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관광체육과	1	체육공원 관리·운영	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3조	관광체육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세무과	1	지방세 제증명 발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	세무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당해 읍·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·감액결정 및 징수	「논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4조	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33조	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4	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		4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현행			
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세무과	5	재산세과세대상 및 (건축물,주택,토지) 납세의무자 이동조사	「지방세법」 제120조 「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」 제14조
	6	지방세 자진신고 처리 (음·면분)	「지방세법」 제20조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3조
회계과	1	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관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」 제2조, 제4조
	2	시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
	3	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
	4	불용물품 매각처분	「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
	5	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 명령	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5조
	6	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	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5조
	7	공유재산 실태조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, 제8조
민원토지과	1	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(대상: 주민등록표상의주소, 사업자등록증의사업장소재지,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,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)	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의2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26조의2, 제26조의3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7조, 제18조
도로교통과	1	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
	2	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

개정안			
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세무과	5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6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회계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4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5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6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7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민원토지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도로교통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현행			
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환경과	1	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(면에 한함)	「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3조
	2	쓰레기 투기단속	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, 제63조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42조
	3	공중화장실 관리	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산림공원과	1	시유재산(임야)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
	2	국공유재산 실태조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, 제8조
희망마을건설과	1	국공유재산 실태조사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조, 제8조
도시재생과	1	<u>가로(보안)등 관리</u> 가. 공공요금 및 제세 나. 보안등신설 접수	-
안전총괄과	1	재해의 응급조치 및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4조
	2	재해조사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8조
	3	수방자재의 비축·관리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3조
보건소	1	방역소독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

개정안			
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환경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산림공원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희망마을건설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<u>양수기 보관, 관리 및 대부</u>	「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」 제3조, 제4조
도시재생과	1	<u>가로(보안)등 관리</u> - <u>보안등신설 접수</u>	「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(공원등) 설치·관리 규칙」 제8조
안전총괄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보건소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

현행				개정안			
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소관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열린홍보실	1	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	「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	열린홍보실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자치행정과	1	동 근무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	자치행정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동장의 관내 출장	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8조	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. 근무지정 나. 사무의 인계·인수 다. 관내출장명령 및 복명서 처리 라. 당직근무명령 마. 시간외 근무명령 바.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	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 「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」 제1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9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8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6조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	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4	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	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		4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5	「인감증명법」 제3조 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	「인감증명법」 제14조의 2		5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현		행	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주 민 생 활 지원과	1	각종급여대상자 및 (기초생활보장, 영유아보육, 아동청소년, 한부모가족, 장애인복지, 노인복지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사회취약계층, 출소에정자)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, 조사후 반영보장결정 요청,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
	2	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다음 사항 -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	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2조
사 회 복지과	1	장애인 등록접수 복지카드 전달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세무과	1	지방세 제증명 발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
	2	해당 등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·감액결정 및 징수	「논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4조
	3	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	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33조
	4	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	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
	5	재산세 과세대상(건축물, 주택, 토지) 및 납세의무자 이동 조사	「지방세법」 제120조 「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」 제14조
회계과	1	불용물품 매각처분	「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시행규칙」 제15조
	2	배정예산 범위에서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명령	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5조
	3	지정공공시설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	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조

개 정 안			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주 민 생 활 지원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사 회 복지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세무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4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5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회계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현				개			
행				정			
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소 관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민 원 토지과	1	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(대상: 주민등록표상의주소, 사업자등록증의사업장소재지,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,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주소 및 영업장소재지)	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의2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26조의2, 제26조의3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7조, 제18조	민 원 토지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안 전 총괄과	1	수방자재의 비축·관리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3조	희 망 마 을 건설과	1	<u>양수기 보관, 관리 및 대부</u>	<u>「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」 제3조, 제4조</u>
보건소	1	방역소독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	안 전 총괄과	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			보건소	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없 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없 음

나. 추계결과 : 없 음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박 찬 해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04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제104조(사무의위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,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